

사전감사대상

문서번호	자자 5011 - 459		감사 ^대 _본			
처리기한	1996. . .	보존기간	이 사 부총재 총 재			
기 안	1996. 8.	영구				
발 신	1996. . .					
과 장 부 장		3/1 8/30				
기 안 자	임	경	합의	(법규과)기획부장 ^{do} 업무과장 ^{mg}	전결근거	직무권한분류표 제1장 제1절 제1항 제4호
소 속	자금부	자금과				
직 위	조사역	전화 4492				
수 신 참 조 제 목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개정						
무역금융제도관련 규제완화방안을 (붙임1)과 같이 검토하고 (붙임2)와 같이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무역금융제도관련 규제완화방안 1부. 2.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개정(안) 1부. 끝.						
사본수신처 : 한국은행 행내 021-10('89.11.19) ()						
(결제서식)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전송수 1996. 8. 29 접수 1996. 8. 26 법규과 연혁 기록 공 란 필요 란		

[要 約]

무역금융 이용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폐지 및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등의 여건변화를 적극 감안하여 무역금융제도관련 규제를 완화

1. 主去來外國換銀行制度 廢止

- 무역금융관련 주거래외국환은행제도를 폐지하여 거래외국환은행별로 당해 업체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무역금융을 취급
 - 다만, 포괄금융의 경우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1천만달러 미만인 영세수출업체만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동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행 주거래외국환은행제도 존치
- 이에 따라 주거래외국환은행의 부거래외국환은행에 대한 읍자한도 통보절차, 주거래외국환은행의 실적기준금융 이용업체 선정 및 통보절차 등을 폐지
- 아울러 현재 주거래외국환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수출실적의 승계인정 및 무역금융관련 위규업체에 대한 제재 등의 업무를 거래외국환은행이 취급토록 변경

2. 融資對象 輸出實績 認定範圍 擴大

- 단순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의 금액제한(건당 20만달러 이하) 폐지
- 대금교환도(COD 및 CAD)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의 대금입금기한 제한(선지 후 60일 이내) 폐지
- 국제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을 무역금융 읍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

(불임 1)

貿易金融制度關聯 規制緩和方案

무역금융 이용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폐지 및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등의 여건변화를 적극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무역금융제도관련 규제를 완화

1. 主去來外國換銀行制度 廢止

가. 現 況

- 현재 무역금융 이용업체는 당해 업체의 무역금융 융자한도의 결정 및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주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함
 - 주거래외국환은행은 당해 업체의 수출실적과 융자한도관리 내역을 매월 부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보고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부거래 외국환은행에 당해 업체의 융자한도를 배정

나. 問題點

- 94.3월 무역금융 이용업체에 대한 대응수출의무 확인제도 등 사후관리가 폐지됨에 따라 주거래외국환은행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부거래외국환은행의 수출실적 및 융자한도의 관리·통보 관련 업무 부담 지속

다. 改善方案

— 주거래외국환은행제도를 폐지하여 거래외국환은행별로 당해 업체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무역금융을 취급

- 다만, 포괄금융의 경우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1천만달러 미만인 영세업체만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현행 주거래외국환은행제도를 계속 존치하여 동 요건을 확인할 필요

— 주거래외국환은행제도 폐지로 다음의 업무절차 및 규제도 폐지

- 주거래외국환은행의 부거래외국환은행에 대한 용자한도 통보절차
- 주거래외국환은행의 실적기준금융 이용업체 선정 및 통보절차
- 주거래외국환은행의 실적기준 건설·용역수출금융 이용업체* 선정 및 통보절차
 - * 현재 외화입금실적이 과거 1년간 1백만달러 이상인 업체의 신청에 의해 주거래외국환은행이 이용업체를 선정
- 동일업체에 대한 용자취급은행수 제한(20개 은행)
- 실적기준 원자재금융 이용업체에 대한 용자취급은행 제한*
 - * 현재 실적기준 원자재금융 이용업체에 대하여 신용장기준으로 생산자금을 융자할 경우에는 당해 실적기준 원자재금융 용자취급은행만이 수출신용장 등에 대한 수출승인과 생산자금의 용자취급이 가능

— 아울러 현재 주거래외국환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다음의 업무를 거래외국환은행이 취급토록 변경

-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와 영업의 양수 및 기업의 합병 등의 경우 수출실적의 승계인정 외국환은행을 주거래외국환은행에서 거래외국환은행으로 변경
- 업체별 평균가득률 및 평균원자재의존율 산정기관을 주거래외국환은행에서 거래외국환은행으로 변경
- 무역금융관련 위규업체 등에 대한 제재(또는 감면)업무 취급은행을 주거래외국환은행에서 거래외국환은행으로 변경하고 동 행은 제재(또는 감면)조치후 동 내용을 당행 및 타 외국환은행에 통보

2. 融資對象 輸出實績 認定範圍 擴大

가. 現 況

- 현재 단순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은 건당 20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무역금융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
- 또한 대금교환도(COD 및 CAD)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의 경우 선적후 60일 이내에 수출대금 전액이 입금된 분만 수출실적으로 인정
- 한편 국제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은 그 동안 동 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이 활발하지 않아 무역금융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 불인정

나. 改善方案

- 단순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을 금액제한 없이 무역금융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
 - 95. 2월 「외국환관리규정」상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선수금의 영수한도가 폐지된 데다 영세수출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융자대상 확대

— 대금교환도(COD 및 CAD)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을 대금입금기한 제한 없이 무역금융 용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

- 96. 6월 「외국환관리규정」상 본지사간 수출거래를 제외하고는 동 방식에 대한 수출대금 영수기한 제한이 폐지된 점을 감안하여 동 방식의 수출실적을 대금입금기한의 제한 없이 용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

다만, 본지사간의 수출거래인 경우에는 물품의 선적후 1년 이내에 수출대금 전액이 입금된 분으로 한정

— 또한 최근 수출거래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팩트링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을 용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

- 다만, 본지사간의 수출거래인 경우에는 물품의 선적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후 1년 이내에 수출대금 전액이 입금된 분으로 한정

3. 要措置事項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및 동 「절차」 개정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96.8.1 제1장 총칙 제1조 ~ 제2조 (생략) 제3조(융자취급은행) ①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을 수혜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해 업체의 무역금융 융자한도의 결정과 재계 등 무역금융에 관한 종합관리를 담당할 외국환은행(1개 영업점을 기준으로 함, 이하 "주거래외국환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거래외국환은행이 아닌 외국환은행이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해당 업체의 융자한도 여유의 유무를 확인받은 후 취급하여야 한다. ③ 동일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을 취급하는 은행은 20개 은행(영업점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종합무역상사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지방영업소 관할 지역별로 2개 은행 이내에서 융자취급은행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 ~ 제6조 (생략)	제1장 총칙 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융자취급은행) 이 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은 각 외국환은행이 취급한다. (삭제) (삭제) 제4조 ~ 제6조 (현행과 같음)	주거래외국환은행제도 폐지 주거래외국환은행제도 폐지에 따라 융자한도 확인절차 불필요 융자취급은행수 제한 폐지

현행	개정(안)	비고
제2장 일반수출입금융 제7조(융자대상)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은 제1항 제3호의 수출실적에 포함할 수 있다. 1. 건당 미화 20만 「달러」 이하의 단순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으로서 대응수출이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수출대금 전액이 입금된 분 2. 대금교환도(COD 및 CAD)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으로서 선적후 60일 이내에 수출대금 전액이 입금된 분 3.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세판매장을 통하여 자가생산품을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으로서 「보세판매장 운용요령」(관세청고시)에 따라 그 판매대전을 외국환은행에 매각한 분 (신설)	제2장 일반수출입금융 제7조(융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은 제1항 제3호의 수출실적에 포함할 수 있다. 1. 단순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으로서 대응수출이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수출대금 전액이 입금된 분 2. 대금교환도(COD 및 CAD)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으로서 수출대금 전액이 입금된 분 다만, 본지사간의 수출거래인 경우에는 물품의 선적후 1년 이내에 수출대금 전액이 입금된 분 3.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세판매장을 통하여 자가생산품을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으로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에 따라 그 판매대전을 외국환은행에 매각한 분 4. 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으로서 수출대금 전액이 입금된 분 다만, 본지사간의 수출거래인 경우에는 물품의 선적후 또는 수출환이음의 일람후 1년 이내에 수출대금 전액이 입금된 분	단순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의 금액제한 폐지 대금교환도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의 수출대금 입금기한 제한 완화 관세청고시 변경(96.7.1) 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을 융자대상 수출실적에 포함

현행	개정(안)	비고
(용자대상증빙의 요건) 제7조에서 정하는 수출신용장, 선수출 제,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및 내국신용장(이하 "수출신용장 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제8조(용자대상증빙의 요건) 제7조에서 정하는 수출신용장, 선수출 계약서,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및 내국신용장(이하 "수출신용장 등"이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수출신용장	1. 수출신용장	
가. 나. (생략)	가. 나. (현행과 같음)	
결제통화가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가 인 정된 외국통화 또는 원화로 표시된 것일 것	(삭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96.6.1)시 지정영수통화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다. 바. (생략)	다. 바. (현행과 같음)	목 채상
선수출계약서와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2. 선수출계약서와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결제통화가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가 인 정된 외국통화 또는 원화로 표시된 것일 것	(삭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96.6.1)시 지정영수통화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가. 나. (생략)	가. 나. (현행과 같음)	목 채상
(생략)		
(생략)	3. (현행과 같음)	
(생략)	제9조 (현행과 같음)	
5.(포괄금융 수혜업체의 선정) (신설)	제10조(포괄금융 수혜업체) ① 포괄금융을 수혜하고자 하는 업 체는 당해 업체의 무역금융 융자한도의 결정 등 무역금융에 관 한 종합관리를 담당할 외국환은행(1개 영업점을 기준으로 함, 이하 "주거래외국환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포괄금융 수혜업체의 주거래외국환 은행 지정

현행	개정(안)	비고
① 주거래외국환은행은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동 업체를 포괄금융 수혜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실적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동 기간 동안의 수출실적이 1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포괄금융 수혜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 항 채하
② 주거래외국환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포괄금융 수혜업체의 자격을 매년 1월중에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재심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주거래외국환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포괄금융 수혜업체의 자격을 매년 1월중에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재심사 선정하여야 한다.	- 항 채하 및 조문정비
제11조 (생략)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융자한도) ① ~ ② (생략)	제12조(융자한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실적기준으로 생산자금을 수혜하는 업체(이하 “실적기준 생산자금 수혜업체”라 한다)에 대한 융자한도는 융자신청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출실적의 1/3 또는 융자신청 9개월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출실적의 1/3 해당 금액 범위내에서 발급된 수출실적확인서의 금액에 당해 업체의 평균가득률을 곱한 가득외화액 범위내로 한다. 다만, 위 한도중 융자신청 9개월전 수출실적 기준한도 이용업체는 향후 1년간 동 기준한도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실적기준으로 생산자금을 수혜하는 업체(이하 “실적기준 생산자금 수혜업체”라 한다)에 대한 융자한도는 융자신청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출실적의 1/3 또는 융자신청 9개월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출실적의 1/3 해당 금액에 당해 업체의 평균가득률을 곱한 가득외화액 범위내로 한다. 다만, 위 한도중 융자신청 9개월전 수출실적 기준한도 이용업체는 향후 1년간 동 기준한도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 주거래외국환은행제도 폐지로 실적기준 생산자금의 수출실적 확인서가 폐지됨에 따른 조문 정비
④ ~ ⑧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제13조(용자한도의 산정) ① 제12조에서 정하는 업체별, 자금별 용자한도는 매월 당해 업체의 주거래외국환은행이 자사제품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실적기준 생산자금 또는 실적기준 포괄금융의 경우에는 90일(수출실적확인서의 유효기간) 단위로 산정한다. (신 설) ② 제12조에서 정하는 업체별 평균가득률 또는 평균원자재의존율은 한국은행 자금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래외국환은행이 산정한다. 제14조(용자금액) ① 용도별 금융의 용자금액은 제12조에서 정한 용자한도 범위내에서 자금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생산자금의 용자금액은 당해 수출신용장 등 또는 수출실적확인서의 가득외화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등의 경우 미화 1「달러」당 68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비제열대기업의 경우 미화 1「달러」당 40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2. ~ 3. (생략) ② (생략)	제13조(용자한도의 산정) ① 제12조에서 정하는 자금별 용자한도는 매월 각 외국환은행이 당해 업체와 거래한 자사제품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포괄금융 용자한도는 매월 당해 업체의 주거래외국환은행이 자사제품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실적기준 생산자금 또는 실적기준 포괄금융의 용자한도는 90일(실적기준 포괄금융의 경우 수출실적확인서의 유효기간) 단위로 산정한다. ② 외국환은행은 한국은행 자금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출실적을 이관받아 당해 업체의 용자한도 산정시 동 수출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2조에서 정하는 업체별 평균가득률 또는 평균원자재의존율은 한국은행 자금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외국환은행이 산정한다. 제14조(용자금액) ① 용도별 금융의 용자금액은 제12조에서 정한 용자한도 범위내에서 자금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생산자금의 용자금액은 당해 수출신용장 등의 가득외화액 또는 실적기준 생산자금 용자한도의 외화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등의 경우 미화 1「달러」당 68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비제열대기업의 경우 미화 1「달러」당 40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용도별금융의 주거래외국환은행 제도 및 수출실적확인서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 다른 외국환은행으로의 수출실적 이관 허용 평균가득률 등의 산정기관 변경 및 항 채하 수출실적확인서 폐지에 따른 용자금액기준 변경

현행	개정(안)	비고
제15조 (생략)	제15조 (현행과 같음)	
제16조(융자기간) ① ~ ② (생략)	제16조(융자기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용장기준금융의 자금별 융자기간 만료일은 당해 수출신용장 등의 유효기일 범위내에서 선적기일 또는 인도기일에 7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로 하며, 실적기준 생산자금 및 실적기준 포괄금융의 융자기간 만료일은 동 융자한도의 유효기간(해당 수출실적확인서에 의한 최초 융자취급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③ 신용장기준금융의 자금별 융자기간 만료일은 당해 수출신용장 등의 유효기일 범위내에서 선적기일 또는 인도기일에 7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로 하며, 실적기준 생산자금 및 실적기준 포괄금융의 융자기간 만료일은 동 융자한도의 유효기간(실적기준 포괄금융의 경우 해당 수출실적확인서에 의한 최초 융자취급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실적기준 생산자금의 수출실적확인서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융자취급의 제한) ① 실적기준 생산자금 수혜업체 및 실적기준 포괄금융 수혜업체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대출 융자대상품목의 수출실적을 수출실적확인서 발급의 대상이 되는 수출실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융자취급의 제한) ① 실적기준 생산자금 수혜업체 및 실적기준 포괄금융 수혜업체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대출 융자대상품목의 수출실적을 실적기준 생산자금 및 실적기준 포괄금융 융자한도의 산정대상이 되는 수출실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출실적확인서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② 실적기준 생산자금 및 실적기준 포괄금융의 융자기간을 연장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융자기간내에 <u>입금된 수출실적확인서의 대상이 되는 수출대금에</u> 상당하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연장 취급한 융자금이 완제될 때까지 신규의 생산자금(실적기준 생산자금 포함) 및 포괄금융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생 략)	② 실적기준 생산자금 및 실적기준 포괄금융의 융자기간을 연장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융자기간내에 <u>동 융자금과 관련하여</u> <u>입금된 수출대금에</u> 상당하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연장 취급한 융자금이 완제될 때까지 신규의 생산자금(실적기준 생산자금 포함) 및 포괄금융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현행과 같음)	- 수출실적확인서 폐지에 따른 조 문 정비
제18조(융자취급은행의 제한) ① 실적기준 원자재금융 수혜업체에 대하여 신용장기준으로 생산자금을 융자할 경우에는 당해 실적기준 원자재금융 융자취급은행만이 수출신용장 등에 대한 수출승인과 생산자금의 융자를 취급할 수 있다. ② 하나의 수출신용장 등과 관련된 수출입승인, 무역금융의 취급 및 수출대금의 영수는 동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당해 외국환은행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자금부장 또는 지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융자취급은행의 제한) (삭 제) 하나의 수출신용장 등과 관련된 수출입승인, 무역금융의 취급 및 수출대금의 영수는 동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당해 외국환은행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자금부장 또는 지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실적기준 원자재금융 수혜업체에 대한 융자취급은행 제한 폐지 -항번호 삭제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장 건설·용역수출금융	제3장 건설·용역수출금융	
제19조 (생략)	제19조 (현행과 같음)	
제20조(용자한도) ① (생략)	제20조(용자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실적기준 건설·용역수출금융 수혜업체에 대한 용자한도는 당해 업체의 용자신청 전월로부터 과거 1년간 외화입금실적의 1/12 또는 과거 3개월간 외화입금실적의 1/3 범위내에서 발급된 외화입금실적확인서의 금액 범위내로 한다.	② 실적기준 건설·용역수출금융 수혜업체에 대한 용자한도는 매 90일 단위로 산정하며 각 외국환은행이 당해 업체와 거래한 용자신청 전월로부터 과거 1년간 외화입금실적의 1/12 또는 과거 3개월간 외화입금실적의 1/3 해당 금액 범위내로 한다.	외화입금실적확인서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 및 제22조 제3항에서 용자한도 산정주기 이관
③ 제2항에서 정하는 외화입금실적확인서의 발급기준이 되는 외화입금실적은 당해 업체의 정상적 영업활동에 따라 해외로부터 송금된 분을 기준으로 하되, 원화대가의 외화매각실적과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대외경상운항경비 지급실적(임차료 및 부대비용 포함)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서 정하는 외화입금실적은 당해 업체의 정상적 영업활동에 따라 해외로부터 송금된 분을 기준으로 하되, 원화대가의 외화매각실적과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대외경상운항경비 지급실적(임차료 및 부대비용 포함)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외화입금실적확인서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
제21조(용자금액) 용자금액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제21조(용자금액) 용자금액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생산자금의 용자금액은 당해 외화표시 건설·용역공급계약서의 가득외화액 또는 외화입금실적확인서의 금액에 대하여 미화 1「달러」당 68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1. 생산자금의 용자금액은 당해 외화표시 건설·용역공급계약서의 가득외화액 또는 실적기준 건설·용역수출금융 용자한도의 외화금액에 대하여 미화 1「달러」당 68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외화입금실적확인서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제22조(융자금) ① ~ ②(생략)	제22조(융자금)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실적기준 건설·용역수출금융의 융자기간은 외화입금실적확인서에 의한 최초 융자일로부터 90일로 한다.	③ 실적기준 건설·용역수출금융의 융자기간 만료일은 동 융자한도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외화입금실적확인서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 및 제20조 제2항으로 융자기간 이관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 (생략)	제23조 (현행과 같음)	
제4장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대출	제4장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대출	
제24조 ~ 제27조 (생략)	제24조 ~ 제27조 (현행과 같음)	
제5장 내국신용장	제5장 내국신용장	
제28조 ~ 제32조 (생략)	제28조 ~ 제32조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제6장 사후관리 및 제재	제6장 사후관리 및 제재	
제33조 ~ 제34조 (생략)	제33조 ~ 제34조 (현행과 같음)	
제35조(제재) ① 외국환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제재대상자로 하여 한국은행 자금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업체의 주거래외국환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제재)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에 관한 제재대상이 된다.	주거래외국환은행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물품인수를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물품을 인수하고 물품수령증명서를 공급자 발행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고 있어 내국신용장 수혜자가 신고한 경우	2.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물품인수를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물품을 인수하고 물품수령증명서를 공급자 발행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고 있어 내국신용장 수혜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고한 경우	제2항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고 이관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주거래외국환은행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거나 내국신용장 수혜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고 동 내용을 한국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래외국환은행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되 동 제재감면 사유 및 내용을 한국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은행은 제1항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한국은행 및 다른 외국환은행에 제재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은행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되 동 제재감면 사유 및 내용을 한국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거래외국환은행제도 폐지에 따른 제재 외국환은행의 변경 및 제1항 제2호로 내국신용장 수혜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고 이관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제2항에 의하여 제재사실을 통지받은 외국환은행은 당해 업체에 대하여 통지받은 제재내용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재사실을 통지받은 외국환은행의 제재 명시
③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항 채하

현행	개정(안)	비고
제7장 보칙 제36조 ~ 제37조 (생 략) (신 설)	제7장 보칙 제36조 ~ 제37조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6. 1. 16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한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과 관련된 지급보증에 대하여는 종전 세칙을 계속 적용한다.	- 시행일 및 경과조치 명시